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1-20

대 구 고 등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4누1264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
피고, 피항소인	○○시 ○구청장
제 1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24. 10. 23. 선고 2024구합20255 판결
변 론 종 결	2025. 10. 17.
판 결 선 고	2025. 11. 14.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2. 10. 8. 원고에게 한 취득세 6,199,270원(가산세 포함) 및 지방교육세 531,3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1-20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주식회사 C(이하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는 2020. 1. 8. 부동산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당초 대표자는 사내이사인 원고의 배우자 D이었다.

2) C는 2021. 7. 9. ○○시 ○구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원고는 2022. 7. 4. C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된 신탁등기 내용 등

1) G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 대표자이자 변호사인 B은 2021년경부터 '신탁 방식을 통한 종합부동산세 절감방안'이라는 내용을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홍보하여 왔다.

2) C는 2022. 1. 10. D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를 C로, 수탁자를 D'으로 하는 부동산 관리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22. 3. 22. D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 사건 신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신탁계약]
당사자들은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권 명의만을 수탁자 명의로 변경하고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신탁 계약을 체결한다. **제3조(신탁의 기간)** 본 계약에 따른 신탁의 기간은 본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10년으로 한다. 단, 수익자가 원하는 경우 수탁자와 위탁자에게 통지하면 통지일로부터 1개월 뒤에 본 신탁계약은 종료된 것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1-20

으로 본다.

제5조(신탁 부동산의 관리)

① 수탁자는 신탁 부동산의 명의를 보유하고, 수익자의 승낙을 얻어 대상 부동산의 처분 및 관리행위를 할 수 있다.

② 수익자는 신탁 부동산의 일체의 처분 및 관리행위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 수탁자에게 처분 및 관리행위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제6조(신탁 부동산의 수익 및 비용의 처리)

① 신탁 부동산의 관리 및 처분에 따른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권리는 수익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

③ 수탁자는 신탁 부동산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받거나 수탁자의 이름으로 지급하여야 할 경우 수익자에게 그 비용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수익자는 신탁 부동산의 관리 및 처분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최종적으로 부담한다.

제7조(신탁의 보수)

수탁자에게 본 계약에 따른 신탁의 대가로 지급하는 보수는 없는 것으로 한다.

3) C는 2022. 1. 11. G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위탁자 지위를 G에 이전하는 내용의 위탁자 지위 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G는 그 다음날인 2022. 1. 12.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위탁자 지위를 원고에게 1,000,000원에 이전하는 내용의 위탁자 지위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지위이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지위이전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지위이전계약]

당사자들은 신탁계약상의 위탁자 지위의 양도와 관련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양수도 대상 권리)

①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신탁계약상의 위탁자 지위를 신탁법 제10조에 따라서 이전한다.

1. (생략)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1-20

② 양수인은 제1항에 따른 신탁계약상의 수익자 지위를 이전받지 않는다.

③ 양수인은 제1항에 따른 신탁계약의 내용을 검토하였으며, 양도인이 제1항에 따른 신탁계약에 따라 가지고 있는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승계함을 확인한다.

제3조(양수도의 방법)

① 양도인과 양수인이 본 위탁자 지위변경계약서에 기명날인함과 동시에 제2조 제1항에 따른 위탁자의 지위가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양도된 것으로 본다.

② 양도인은 제2조 제1항의 신탁계약의 수탁자와 수익자에게 별지의 서식에 따라 본 위탁자 지위변경계약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양도인은 본 위탁자 지위변경계약과 동시에 제2조 제1항에 따른 계약의 수탁자에게 관련 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지시하여야 한다.

제4조(양수도 대가)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제2조 제1항의 신탁계약상의 위탁자 지위를 양수하는 대가로 금 100만원을 계약체결과 동시에 지급한다.

제5조(계약의 해제)

① 양도인은 언제든지 본 위탁자 지위변경계약을 양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즉시 해제할 수 있다.

② 양도인은 제1항에 따라 본 위탁자 지위변경계약을 해제한 경우 제4조에 따라 지급받은 위탁자 지위변경의 대가를 양수인에게 연 12%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③ 양수인은 제1항에 따라 본 위탁자 지위변경계약이 해제된 경우 제2조 제1항의 신탁계약상의 위탁자 지위를 양도인에게 원상회복시키는 등기절차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양도인은 제1항에 따른 본 위탁자 지위변경계약의 해제 및 그에 따른 권리 의무의 원상회복 절차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다. 피고의 처분 내용 등

1) 원고는 이 사건 지위이전계약에 따른 신탁원부 변경등기를 위하여, 2022. 1. 1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과세표준을 1,000,000원으로 계산한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합계 11,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피고는 2022. 10. 8. '위탁자 지위의 이전으로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본문에 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1-20

라 새로운 위탁자인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무상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합계 6,730,630원(= 취득세 6,199,270원 + 지방교육세 531,360원, 각 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10. 1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10. 31.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2, 13, 14, 17, 18, 19,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원고 주장

가. 이 사건 신탁계약의 무효를 전제로 한 주장 (주위적 주장)

이 사건 신탁계약은 신탁의 실질을 갖추지 못했거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한 신탁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그 결과 신탁법이 정한 방법에 따라 최종위탁자에게 위탁자의 지위가 유효하게 이전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며,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지위이전계약 역시 조세회피를 위한 가장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취득세 납세의무의 전제가 되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이 사건 신탁계약의 유효를 전제로 한 주장 (예비적 주장)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가 위탁자 지위를 이전받은 대가로 지급한 금액은 1,000,000원이므로, 그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1-20

가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였고, 이는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것이다.

2) ○○특별시 등 다른 과세관청은 이 사건과 동일·유사한 사안에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위탁자 지위 이전 대가를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조세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였다.

3) 이 사건 지위이전계약은 이 사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위탁자 지위를 양도한 것에 불과하고, 위탁자 지위는 경제적으로 가치가 없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러한 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이 사건 신탁계약의 무효 여부 판단)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1) 신탁법에 따른 신탁이란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하고(제2조),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멸실, 훼손, 그 밖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모두 신탁재산에 속한다(제27조).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등을 하고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으며, 다만 신탁행위로 이를 제한할 수 있다(제31조).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신탁사무를 처리하여야 하고(제32조),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신탁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제33조). 수탁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1-20

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수익자의 동의를 받아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를 갈음하여 신탁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수탁자는 그 선임·감독에 관하여만 책임을 진다(제42조).

한편, 신탁법상의 신탁에는 부동산관리신탁이 포함되는데, 부동산관리신탁이란 부동산 관리만을 위하여 부동산관리자를 수탁자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하고, 수탁자가 소유자를 대신하여 부동산에 관한 일체의 관리를 하고 수익을 수익자에게 교부하여 주거나 수탁재산의 소유권을 관리하여 주는 신탁제도로서 신탁재산에 관한 종합적 운영관리를 하는 방식(갑종 관리신탁)과 등기부상의 소유권 관리를 하는 방식(을종 관리신탁)으로 구분된다.

2) 부동산의 신탁에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이와 같이 신탁의 효력으로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결과 수탁자는 대내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권을 갖는 것이고, 수탁자는 신탁의 목적 범위 내에서 신탁계약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신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는 제한을 부담하는 것에 불과하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70460 판결 등 참조). 다만 수탁자에게 토지 소유권의 명의만이 이전될 뿐이고 수탁자에게 이에 대한 관리, 처분의 권한과 의무가 적극적, 배타적으로 부여되지 않을 경우 그러한 신탁관계는 이른바 명의신탁 또는 수동신탁에 해당한다. 이러한 신탁관계는 신탁법상 신탁이라고 할 수 없고(대법원 1979. 1. 16. 선고 78누396 판결 등 참조), 위탁자가 수탁자의 신탁재산에 대한 처분·관리권을 공동행사하거나 수탁자가 단독으로 처분·관리할 수 없도록 실질적인 제한을 가하는 것은 신탁법의 취지나 신탁의 본질에 반한다(대법원 2003. 1.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1-20

27.자 2000마2997 결정 등 참조).

3) 신탁법 제5조 제1항은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은 무효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목적이 위법하거나 불능인 신탁은 무효로 하고 있다. 이 중 특히 신탁의 목적이 불능인 경우에 신탁을 무효로 하는 취지는, 신탁법상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신탁 목적이 신탁계약 당시부터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원시적 불능인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데에 있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5두49969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위 관련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아래 ①, ②, ③ 기재와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신탁계약은 신탁법에서 규정한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재산세 등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한 신탁 또는 그 목적이 원시적 불능인 신탁에 해당하여 신탁법 제5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며, 그 결과 신탁법이 정한 방법에 따라 최종위탁자에게 위탁자의 지위가 유효하게 이전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취득세 납세의무의 전제가 되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신탁계약은 '당사자들은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권 명의만을 수탁자 명의로 변경하고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신탁 계약을 체결한다.'라고 정하여 소유권 명의만을 신탁하였음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신탁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1-20

약에 의하면, 수탁자는 수익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신탁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 및 관리행위를 할 수 있고(제5조 제1항), 수익자가 신탁 부동산에 관하여 일체의 처분 및 관리행위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 수탁자에게 처분 및 관리행위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으며(제5조 제2항), 수익자는 신탁 부동산의 관리 및 처분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최종적으로 부담한다(제6조 제4항).

이처럼 이 사건 신탁계약상의 수탁자는 신탁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익자에 종속되어 처분 및 관리행위를 할 수밖에 없으므로, 사실상 소유권 명의를 갖는 것 외에는 어떠한 처분 및 관리 권한을 갖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이는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신탁이 신탁재산에 관하여 수탁자만이 배타적인 처분·관리하는 것을 본질로 하고, 특히 부동산관리신탁의 경우 수탁자가 소유자를 대신하여 부동산에 관한 일체의 관리를 하거나 등기부상의 소유권 관리를 하도록 하는 것에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신탁계약은 신탁법상 신탁이 아니라 이른바 양자간 명의신탁 또는 수동신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②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신탁법은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사항을 목적으로 하거나, 목적이 위법하거나 불능인 신탁은 무효로 하고 있고(제5조 제1항, 제2항), 어떠한 신탁이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등의 경우에는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자인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신탁계약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회피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에서 체결되었고,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 당시 이미 형식적으로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는 내용의 이전계약 체결을 예정하고 있어 사실상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그 신탁 목적 실현이 원시적으로 불능인 신탁에 해당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1-20

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③ 한편, 과세관청은 이 사건 신탁계약의 무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C에 종합부동산세 내지 재산세 등을 부과할 수 있고, 실제 유사 사안에서 각 과세관청은 해당 신탁계약을 무효로 보아 원래 소유자들에게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 측이 당초 종합부동산세 등의 절감을 위해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각종 신고 절차를 진행하였다가 다시 이 사건 신탁계약 등이 무효라고 주장한다는 사정만으로, 납세의무자인 원고의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 용인될 수 없다고 평가하기는 무리가 있다.

다. 소결

이 사건 처분에는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원고의 나머지 주장들은 이 사건 신탁계약의 유효를 전제로 한 주장에 해당하여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곽○○

판사 송○○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1-20

판사 박○○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1-20

[별지]

관계 법령

■ 신탁법

제2조(신탁의 정의)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제5조(목적의 제한)

①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은 무효로 한다.

② 목적이 위법하거나 불능인 신탁은 무효로 한다.

③ 신탁 목적의 일부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신탁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나머지 목적을 위하여 유효하게 성립한다. 다만,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목적과 그렇지 아니한 목적을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분리할 수 있더라도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나머지 목적만을 위하여 신탁을 유지하는 것이 위탁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제10조(위탁자 지위의 이전)

① 위탁자의 지위는 신탁행위로 정한 방법에 따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전 방법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위탁자의 지위는 수탁자와 수익자의 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자가 여럿일 때에는 다른 위탁자의 동의도 받아야 한다.

③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신탁이 설정된 경우 위탁자의 상속인은 위탁자의 지위를 승계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27조(신탁재산의 범위)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멸실, 훼손, 그 밖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1-20

제31조(수탁자의 권한)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등을 하고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다만, 신탁행위로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제32조(수탁자의 선관의무)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신탁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3조(충실의무)

수탁자는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신탁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42조(신탁사무의 위임)

①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수익자의 동의를 받아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를 갈음하여 신탁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제1항 본문의 경우 수탁자는 그 선임·감독에 관하여만 책임을 진다. 신탁행위로 타인으로 하여금 신탁사무를 처리하게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⑮ 「신탁법」 제10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3(소유권 변동이 없는 위탁자 지위의 이전 범위)

법 제7조 제1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그 위탁자의 지위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끝.